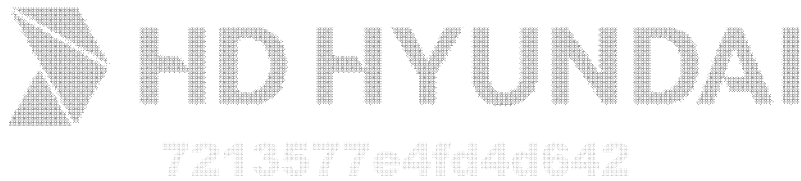


경제제재법령준수지침



2026년 8월



목 차

1.	제정목적	3
2.	적용범위	3
3.	기본원칙	3
4.	실사 및 승인	4
5.	교육 및 자문	5
6.	위반사항의 신고 및 처리	5
7.	내부점검	6
	부 칙	6

<별 첨>

별첨 1	경제제재 의심거래 실사 체크리스트(국문)	7
별첨 2	경제제재법령 준수 표준조항(국문)	9

경제제재법령준수지침

제 정 : 2020. 01. 01.
제1차 개정 : 2021. 05. 01.
제2차 개정 : 2024. 09. 25.
제3차 개정 : 2026. 08. 01.

1. 제정목적

HD현대마린솔루션 주식회사와 HD현대마린솔루션 주식회사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국내외 법인(이하 “회사”라 한다)은 군사적 분쟁, 테러, 유해 화학물질과 마약의 거래, 대량 살상무기 제조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국제정세에 악영향을 끼치는 품목의 유통 및 거래를 제한하는 국제사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본 경제제재법령준수지침(이하 “본 준수지침”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배경을 토대로 국내외 경제제재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2.1 본 준수지침은 회사 및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 2.2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회사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협력회사, 컨설턴트, 에이전트, 판매대리점, 특약점 등의 업체 또는 개인, 회사의 합작투자(Joint Venture) 파트너, 컨소시엄 참여 파트너 등 명칭을 불문하고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거래하는 제3자 및 그 임직원(이하 통칭하여 “이해관계자”라 한다) 에게도 본 준수지침을 고지하고,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본 준수지침에 따라 국내외 경제제재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본원칙

- 3.1 회사의 임직원은 본 준수지침과 아래의 국내외 경제제재법령(이하 통칭하여 “경제제재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국내의 각종 경제제재법령 (예: 대외무역법, 원자력안전법, 방위사업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대한 법률,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
 - 외국의 각종 경제제재법령 (예, 미국, EU, 중국 또는 UN 등의 경제제재 법령 등)
 - 경제제재관련 국제협약 {예: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지 및 그 폐기에 관한 협약(BWC) 등}
 - 그 밖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경제제재법령 (사업이 수행되는 현지 국가 법령 포함)
- 3.2 회사의 임직원은 경제제재법령에서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거래를 하거나 거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 3.3 회사의 임직원은 경제제재법령에서 거래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국가, 품목, 용역, 개인(또는 단체) 등과 관련되어 있거나 관련된 것으로 의심될 수 있는 거래(이하 통칭하여 “의심거래”라 한다)에는 법무팀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실사 및 승인

회사의 임직원은 의심거래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법무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4.1 의심거래에 대한 실사 및 승인

- 회사의 임직원은 의심거래가 경제제재 법령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실사 과정을 사전에 거쳐야 한다. 모든 의심거래를 <별첨 1 경제제재 의심거래 실사체크리스트>에 따라 조사 및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결과는 반드시 법무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무팀은 해당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경제제재법령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금지하여야 하며, 회사 임직원

은 법무팀의 해당 의견에 따라야 한다.

- 회사의 임직원은 의심거래의 조사 및 평가와 관련된 정보, 특히 (1) 거래 상대방이 대한민국, 미국의 OFAC, EU, 영국, 중국 및 UN 등의 제재 당국이 정하는 거래금지 대상자인지 여부(즉, 대한민국, 미국, EU, 영국, 중국, UN 등으로부터 거래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다는 정보), (2) 거래 내용이 경제제재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인지 여부에 관한 내용 등을 문서화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회사의 임직원은 의심거래의 실사 또는 거래과정에서,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아 해당 거래가 경제제재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거나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무팀에 자문하여 거래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2 의심거래의 계약

의심거래의 계약서에는 반드시 경제제재법령 준수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별첨 2 표준 경제제재법령 준수조항>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한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거래상대방이 경제제재법령을 준수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준수하겠다는 약속
- ② 거래상대방이 경제제재법령 또는 경제제재법령 준수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
- ③ 거래상대방의 경제제재법령 또는 경제제재법령 준수조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5. 교육 및 자문

5.1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가 시행하는 경제제재법령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서면,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5.2 회사의 임직원은 본 준수지침 위반의 우려를 인지하는 경우 법무팀에 신고하여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6. 위반사항의 신고 및 처리

- 6.1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경제제재법령 또는 본 준수지침을 위반하거나 그러한 위반과 관련한 회사의 조사를 거부한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규정에 의거 징계한다.
- 6.2 회사의 임직원은 경제제재법령 또는 본 준수지침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속상사, 법무팀에 그러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의 신고 채널(<http://ethics.hhigroup.kr/>의 사이버신고란,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하여 위반사실을 제보할 수 있다.
- 6.3 소속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회사의 임직원은 보고 내용을 법무팀에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 6.4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은 모든 신고사항 처리 및 신고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엄격하게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내부점검

- 7.1 법무팀은 회사의 임직원이 본 준수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임직원은 이러한 점검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7.2 법무팀은 본 준수지침 및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성, 실효성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히 개정하여야 한다.

부 칙

본 준수지침은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본 준수지침은 2021년 5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본 준수지침은 2024년 9월 25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본 준수지침은 2026년 8월 1일부로 시행한다.

별첨 1

경제제재 의심거래 실사 체크리스트

회사의 임직원은 경제제재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사전에 아래 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법무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거래상대방	
1-1	상호(대표자):
1-2	주소:
1-3	연락처:
1-4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1-5	주요 주주:
1-6	주요 임원:
2. 거래상대방 관련 실사항목	
	“적용 가능한 제재(Applicable Sanctions)”란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대한민국 또는 유엔(UN) 및/또는 상기 국가나 기관의 정부 또는 정부기관(총칭하여 “제재당국(Sanctions Authorities)”, 여기에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미국 국무부(DoS) 및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이 제정, 시행 또는 집행하는 수출 통제를 포함한 모든 경제적, 금융적 또는 무역 관련 법령, 규정, 금지조치를 의미한다. “제재대상자(Sanctioned Entity)”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1. 적용 가능한 제재에 따라 제재당국이 지정하거나 집행하는 모든 제재 관련 목록에 등재된 자 2. 적용 가능한 제재에 따라 거래가 전면적으로 금지되거나 일정 조건 하에서 제한되는 자 3.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단독 또는 합산하여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4.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실질적인 지배(Control)를 받는 자 5. 제 1 호 내지 제 4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하여 또는 그들의 지시를 받아 행위하는 자
2-1	거래상대방 및/또는 최종사용자가 제재대상자에 해당(과거 또는 현재)하는가?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인 경우 그 구체적 내역 기재:
2-2	거래상대방과 최종사용자의 모회사, 주주, 임직원 또는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제재대상자에 해당(과거 또는 현재)하는가?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인 경우 그 구체적 내역 기재:
2-3	거래에 제재대상자가 관여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가?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인 경우 그 구체적 내역 기재:
2-4	거래상대방 또는 최종수요자 또는 대상 거래에 관여하는 여하한 자의 이사, 임직원이 제재대상자인가?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인 경우 그 구체적 내역 기재:
3. 거래 내용	
3-1	계약의 목적:
3-2	계약 기간:
3-3	계약 금액:
3-4	거래하게 된 경위 및 근거:
3-5	회사가 제품(용역) 등을 제공 또는 받을 지역:
4. 거래내용 관련 실사 항목	
4-1	거래의 내용(목적)이 인권 침해,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개발 등과 관련되어 있는지는 않은지?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인 경우 그 구체적 내역 기재:
4-2	거래의 목적물에 미국산 기술 또는 물품이 10%이상 포함되어 있는가?
4-3	거래에 미국인(회사) 또는 EU 시민(회사)이 관여하고 있거나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가?

작성일자: _____

작성부서: _____

작 성 자: _____ (서명)

경제제재법령 준수 표준조항

제 00 조 (경제제재법령 준수)

- ① 계약당사자는 대한민국, [계약상대방의 국가], 미국, EU, 중국 및 UN 등의 경제제재법령 및 그 밖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경제제재법령 (이하 통칭하여 '경제제재법령'이라 한다)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 ②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경제제재법령에 대한 위반행위를 알게 되거나, 그러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7 영업일 이내] 계약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③ 계약당사자 일방이 경제제재법령 또는 본 조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방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계약상대방이 전문에 따라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계약상대방은 경제제재법령 또는 본 조를 위반한 계약당사자 일방으로부터 계약금 등 일체의 금원을 받았더라도 그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④ 계약당사자 일방의 경제제재법령 또는 본 조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방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제제재법령 또는 본 조를 위반한 계약당사자 일방은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경제제재법령 또는 본 조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상대방(계열회사 및 임직원 포함)에게 부과되는 제재 등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을 면책시켜야 한다.